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 22

나. 제안자 : 한병환 의원 외 31인

다. 회부일자 : 1999. 1. 2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1999. 1. 2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한병환 의원)

가. 제안이유

○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하여 부천시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재원을 부천시출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함(안 제2조)

○ 기금의 용도를 환경보호와 환경개선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

○ 기금예치은행을 시금고로 하고 기금의 증식을 위해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 기금관리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환경보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환경보전업무 담당과장으로 함(안 제12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농협중앙회 부천시지부에서 그 동안 부천시에 기탁한 환경보전기탁금의 총금액과 기탁 목적 및 용도는?</p> <p>○ 그 동안 환경보전기탁금의 운용관리 방법과 99.제1회추경예산안에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p>	<p>○ 환경보전기탁금 총액은 406,870,050원이며, 기탁 목적 및 용도는 지역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 달라는 것입니다.</p> <p>○ 그 동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운용해오다가 지난 1월 2일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불입하였으며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99.제1회추경예산안에 세입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추경에 세입계상하겠습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별첨"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 110 호
의결년월일	99. 1. 26 (제68회)

제출년월일 : 1999. 1. 25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장

□ 수정이유

-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기금의 증식을 위한 재적립 규정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중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삭제함(안 제3조)
-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재적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00분의 50 이상을 재적립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동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동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를 제3호로한다.

안제4조제3항 중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재적립할 수 있다"를 "100분의 50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생략) 1.~2. (생략) 3.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4. (생략)	제3조(기금의 용도) (제정안과 같음) 1.~2. (제정안과 같음) (삭제) 3. (제정안 제4호와 같음)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 ③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 100분의 50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수정안 포함】

부천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동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잡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사업
2. 자연보호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3. 기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안정성 및 이율 등을 감안하여 예탁한다.
- ③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천시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 ④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3인, 총무·지역경제·환경및교통 관련국장과 상하수도관리 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당연직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⑤위원회에 감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감사는 환경보전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보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조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보전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환경보전업무담당과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